예산총칙

제1조: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	회	계	별	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		계			397,045,254	11,911,358
1.	일	반	회	계	386,636,164	11,599,085
2.	특	별	회	계	10,409,090	312,273
	의 료	보 、	호 기	巾	914,307	27,429
	주민소득	지원 및	생활안정] 기금	2,091,243	62,737
	주	차		장	5,861,999	175,860
	주 거	환 경 기	l 선 시	나 업	268,028	8,041
	발 전 소	주변지 '	역 지 원	사 업	708,865	21,266
	지 ㅎ	· 수	관	리	564,648	16,939

제2조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000,000천원이다.

제6조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171,328천원으로 한다.

제7조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
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